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지난 10년간 美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 목 차

---

### ■ 지난 10년간 美中の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1. 개요 .....	1
2. 美中の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 .....	2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	10

## Executive Summary

### □ 지난 10년간 美中의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 ■ 개요

지난 10년간 글로벌 교역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2000~2007년 사이 7.3% 수준이던 세계 교역의 연평균증가율은 최근 10년(2008~2017년)간 평균 3.3%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G2국가(미국,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조치는 세계의 흐름과 비슷하게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에 집중되어 있다.

#### ■ 美中の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

보호무역 조치는 일반적으로 관세, 비관세 및 수입규제(무역구제)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대상 국가 범위에 따라라도 차별적 적용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G2국가(미국,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 추이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① (전체 보호무역 조치) G2국가(미국,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10년(2008~2017년)간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조치 건수는 총 5,619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51.3%에 해당되는 2,880건은 SPS 조치, 44.7%에 해당되는 2,510건은 TBT 조치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2013~2017년)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많다. ② (수입규제) 최근 5년(2013~2017년)간 미국과 중국의 수입규제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철강분야에서의 미국의 수입규제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에는 총 22건(AD/CV 20건, SG 2건)으로 11배 증가했다.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철강제품, 전기·기계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행한 27개국의 연평균 조치건수가 0.57건인 것에 비해,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만 8건이나 발생했다. 올해에도 철강분야(대형구경강관) 반덤핑/상계관세(AD/CV) 조사를 새로 1건 시작한 상황이다. ③ (무역기술장벽). 최근 5년(2013~2017년)간 미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전기·전자,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TBT 통보건수는 연평균 10.9%씩 증가한 반면 중국은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미국은 2008~2012년보다 최근 5년간 전기·전자 분야에서의 TBT 통보문이 177건 늘어났고,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에서도 각각 109건, 103건씩 증가했다. 동기간 중국은 교통·안전 분야에서만 11건 증가했고 다른 분야는 모두 감소했다. ④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 최근 5년(2013~2017년)간 중국의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SPS)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강화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미국의 對한국 SPS 조치는 2008~2012년 기간보다 50% 이상 감소했고, 중국도 동기간 24% 정도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은 식품안전 분야에서 점차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중국의 對한국 SPS 조치는 지난 2008~2012년 기간보다 80건이나 증가했다. ⑤ (수량제한 조치).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최근 5년(2013~2017년)간 주로 동식물·식품, 화학제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2008~2012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국가의 對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주로 2012~2016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데, 미국의 對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2016년에 2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중국은 2014년 2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주로 동식물·식품, 화학제품 등 분야에서 나타났다.

< 2008~2012년 대비 2013~2017년 미·중의 對한국 보호무역 평가 >

구 분	미국	중국
전체 보호무역 조치	- 조치 건수 감소 · 1,754건 → 1,694건	- 조치 건수 감소 · 1,205건 → 966건
수입규제	- 조치 건수 급증(2건 → 22건) - AD 및 CV 중심으로 급증 - 철강 및 전기·기계제품에 집중	- 조치 건수 증가(3건 → 7건) - 최근 AD, SG 조사사례 증가 - 화학제품 및 고무플라스틱 소폭 증가
무역기술장벽 (TBT)	- 조치 건수 연평균 10.9% 증가 - 전기·전자, 식약, 화학·세라믹 등 분야 100건 이상씩 증가	- 조치 건수 연평균 11.8% 감소 - 교통·안전 분야 중심으로 증가
동식물위생검역 (SPS)	- 조치 건수 감소(2,000건→973건) - 동식물, 식품·안전 등 쏠분야 감소	- 조치 건수 감소(913건→697건) - 식품·안전 분야 증가
수량제한	- 조치 건수 증가(14건→45건) - 동식물 및 식품 중심으로 증가	- 조치 건수 증가(8건→26건) - 동식물·식품, 화학제품 등 증가

■ 종합평가 및 시사점

(종합평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미·중의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지난 5년(2008~2012년)보다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 강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사점)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기업자체의 차별화된 기술수준 역량이 강하게 요구된다. 첫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기 위해 인력양성, 행정지원 등 정부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보호무역주의 관련 사안에 얽혀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 셋째, 기업 자체의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1. 개요

○ 지난 10년(2008~2017년)간 글로벌 교역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미국 등 주요국과 더불어 세계의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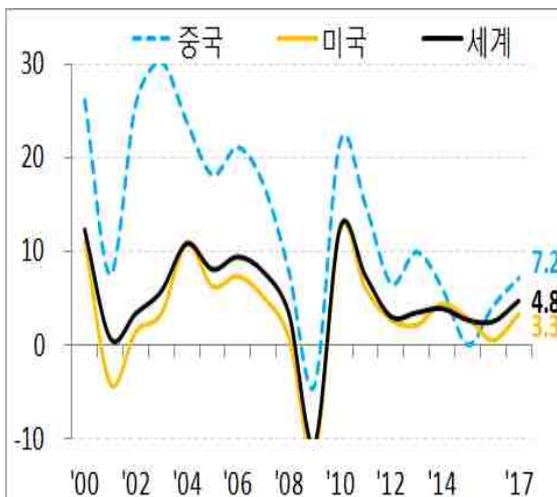
- 2000~2007년 사이 7.3% 수준이던 세계 교역의 연평균증가율은 2008~2017년 사이에는 평균 3.3%로 하락
- 미국과 중국의 수출증가율도 2010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
- 따라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음

- G2국가(미국,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조치도 세계의 흐름과 비슷하게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에 집중되어 있음

- 지난 10년간 전 세계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총 31,588건이며, 이 중에서 17.8%에 해당되는 5,619건이 G2국가(미국, 중국)에 의한 것임
- 동기간 전 세계 對한국 무역기술장벽(TBT) 조치건수 17,525건의 14.3%인 2,510건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받은 조치임

< 세계 교역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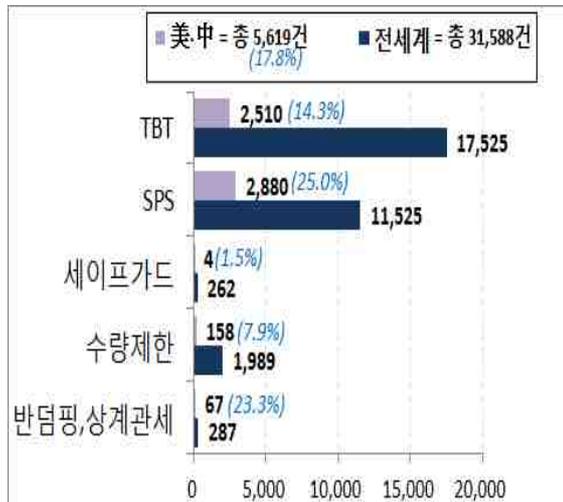
(증가율,%)



자료 : OECD.

< 세계 對한국 보호무역조치 건수 >  
(08~17년 누적기준)

(건)



자료 : WTO-ITIP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 )는 전세계 대비 美·中の 비중임.

## 2. 美中の 대 한국 보호무역 현황

- 보호무역 조치는 일반적으로 관세, 비관세 및 수입규제(무역구제)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대상 국가 범위에 따라서도 차별적 적용
  - UNCTAD에 따르면, 보호무역은 관세,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장벽 등으로 구분함<sup>1)</sup>
  - 또, 보호무역 범위는 WTO 기준에 따라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하는 조치 및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조치 등으로 구분<sup>2)</sup>
  
- 본 보고서에서는 G2국가(미국,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 추이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분석대상 기간 : 2008~2012년 기간(5년)과 2013~2017년 기간(5년)으로 나눔
  - 분석대상 보호무역 조치 : 수입규제(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반덤핑),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수량제한(QR) 조치 등 4대 보호무역 조치
    - TBT, SPS는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영향받는(affected) 조치에 대해 ‘對한국 조치’로 표현하기로 함
      - ※ 수입제한조치는 주로 국내 산업피해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에 해당되는데, 반덤핑관세(AD)와 세이프가드(SG)는 수입급증에 대한, 상계관세(CV)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치임
      - ※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등 조치는 주로 기술표준, 국민건강 등 국내 정책적인 목적으로 존재함
      - ※ 수량제한(QR) 조치는 수량 통제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WTO에서 엄격히 통제함

### <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 >

구 분	유 형	데이터	
수입규제	- 세이프가드(SG), 상계관세(CV), 반덤핑(AD)	WTO-ITIP	-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NTB포털)
비관세장벽	- 무역기술장벽(TBT) - 동식물 위생검역(SPS) - 수량제한조치(QR)		- 국가기술표준원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농림축산부 SPS정보관리시스템 - WTO-ITIP

자료 : UNCTAD TRAINS 자료로 HRI 재구성.

1) [부록 1] 참고.  
 2) 보호무역은 WTO 기준에 따라,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치(All Members), 특정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Bilateral), 모든 국가 혹은 특정국을 상대로 하는 조치(All Members or Bilateral)로 구분.

① 전체 보호무역 조치

○ G2국가(미국,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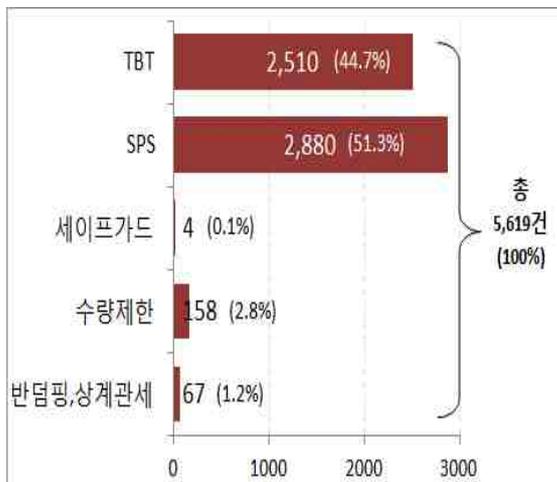
- 지난 10년(2008~2017년)간 G2의 보호무역 조치 중 51%는 SPS 조치, 45%는 TBT 조치로 대부분이 비관세장벽 조치임

- 과거 10년간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조치 건수는 총 5,619건으로 나타남
- 그 중 51.3%에 해당되는 2,880건은 SPS 조치, 44.7%에 해당되는 2,510건은 TBT 조치로 나타남
- 수량제한 조치는 158건이며, 수입규제 조치인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는 71건으로 집계됨

- 최근 5년(2013~2017년)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많음

-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 중 중국發 조치의 비중이 2008~2012년 사이 8.0%에서 최근 5년 사이 5.9%로 줄어들었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1000건 정도로 많음
- 동기간 미국發 조치의 비중도 11.6%에서 10.3%로 줄어들었지만 절대적 규모로는 5년간 1,700건 가까이 기록

< 미·중 對한국 보호무역조치 건수 >  
(08~17년 누적기준) (건)



자료 : WTO-ITIP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 )는 美·中 합산 대비 유형별 비중임.

< 기간별 對한국 보호무역조치 건수 > (건)



자료 : WTO-ITIP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 )는 전세계 건수 대비 비중임.

## ②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 최근 5년(2013~2017년)간 미국과 중국의 수입규제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철강분야에서의 미국의 수입규제가 빈번하게 나타남

- 최근 5년간 미국의 對한국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 신규조사가 과거보다 11배 급증

- 글로벌 국가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빠르게 증가
- 특히,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에는 총 22건(AD/CV 20건, SG 2건)으로 11배 증가

-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철강제품, 전기·기계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있음

- 2013~2017년 사이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철강제품 분야에서 13건 나타났으며, 전기·기계 분야에서도 3건 이루어짐
- 동기간, 중국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화학제품 및 고무·플라스틱 분야에서 각각 2건 씩 이루어짐

< 기간별 對한국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 > (건)



자료 : NTB 자료로 HRI 재구성.

< 기간별 對한국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 > (건)

구분	'08~'12년	'13~'17년
미국	총	2
	철강제품	-
	전기·기계	2
	고무·플라스틱, 섬유	-
중국	총	3
	화학제품	3
	고무·플라스틱	-
	섬유, 철강, 식품	-

자료 : NTB 자료로 HRI 재구성.

- 특히, 과거 10년 사이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행한 27개국의 연평균 조치건수가 0.57건인 것에 비해,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만 8건이나 발생

- 2016년 한 해 동안 신규 조사 개시된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치는 5건인데, 2018년 2월 현재 모두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규제 실행중임
- 트럼프 정부 첫 해인 2017년에 신규 조사 개시된 수입규제는 전년대비 3건 증가한 8건을 기록
- 올해에도 철강분야(대형구경강관) 반덤핑/상계관세(AD/CV) 조사를 새로 1건 시작함

< 2016년 이후 미·중 對한국 수입규제 사례 >

[ 조사 진행 중 ]				
	조사개시	규제	품목명(HS 2단위)	판정 결과
한국	2017-11-09	AD	니트릴 고무(HS40)	조사개시(17.11.09)
	2017-06-23	AD	스티렌(HS29)	조사개시(17.06.23)
	2017-03-27	AD	메틸이소부틸케톤(HS29)	예비판정(17.11.20) : 금호P&B화학(29.9%), 기타(32.3%)
미국	2018-01-17	AD/CV	대형구경강관(HS73)	조사개시(18.01.17)
	2017-09-26	AD	PET레진(HS39)	산업피해 예비판정(17.11.08)
	2017-06-28	AD	원추 롤러 베어링(HS84)	예비판정(18.01.30) : 세플라(21.23%), 베어링아트(45.53%), 일진 베어링(45.53%), 일진 글로벌(45.53%), 기타(33.42%)
	2017-06-27	AD	저응점폴리에스터(HS55)	예비판정(17.01.29) : 도레이케미칼(16.48%), 기타(16.48%)
	2017-05-31	AD	합성단섬유(HS55)	예비판정(17.12.18) : 디온나리(45.23%), 휴비스(45.23%), 기타(30.15%)
	2017-05-09	AD	냉간압연강관(HS73)	예비판정(17.11.16) : 상신(48%), 울춘(5.1%), 기타(5.1%)
	2017-04-17	AD	탄소합금강선재(HS72)	예비판정수정(17.11.28) : 포스코(40.8%), 기타(40.8)
[ 규제 실행 중 ]				
	조사개시	규제	품목명(HS 2단위)	판정 결과
한국	2016-10-24	AD	폴리아세탈(HS39)	최종판정(17.10.23), 5년간 부과예정 : KEP(30%), 코오롱플라스틱(6.2%), 기타(30.4%)
	2016-09-22	SG	설탕(HS17)	최종판정(17.05.22), 3년간 부과예정 : 관세(쿼터 외) 50%, 추가관세45%~35%
미국	2017-06-05	SG	세탁기(HS84)	최종판정(18.01.22), 3년간 부과예정 : [부록3] 참고
	2017-05-17	SG	실리콘 태양전지(HS85)	최종판정(18.02.07), 3년간 부과예정 : [부록3] 참고
	2016-07-27	AD	ESBR고무(HS40)	최종판정(17.07.11) : 금호화학(44.3%), LG케미칼(9.66%), 대우인타(44.3%), 기타(9.66%)
	2016-07-20	AD	가스제(HS29,38)	최종판정(17.06.20) : LG화학(2.71%), 애경유화(4.08%), 기타(3.69%)
	2016-04-28	AD/CV	탄소합금후판(HS72)	AD최종판정(17.05.25) : 포스코(7.10%), 기타(7.10%) CV최종판정(17.03.30) : 포스코(4.31%), 기타(4.31%)
	2016-04-19	AD	페로바니듐(HS72)	최종판정(17.03.17) : 코반(3.22%), Fortune(54.69%), 우진(54.69%), 기타(3.22%)
	2016-03-30	AD	인동(HS74)	최종판정(17.02.28) : 봉산(8.43%), 기타(8.43%)

자료 : NTB 자료로 HRI 재구성(2018년 2월 10일 현재 기준임).

주 : 하늘색 ( )는 판정에 의한 부과관세를 의미함.

### ③ TBT<sup>3)</sup> (무역기술장벽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최근 5년(2013~2017년)간 미국의 무역기술장벽이 전기·전자,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난 10년(2008~2017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TBT 통보건수는 연평균 10.9%씩 증가한 반면 중국은 감소함

· 전 세계의 對한국 TBT 통보건수 2008년 1,236건에서 2017년 2,480건으로 연평균 8.0%씩 증가

· 동기간 미국은 연평균 10.9%씩 증가한 반면, 중국은 연평균 11.8%씩 감소

· 2008~2012년 5년간 미국의 對한국 TBT 통보건수는 전 세계의 對한국 통보건수의 9.8%인 753건이었으나, 2013~2017년에는 전 세계의 13.6%인 1,463건으로 급증

- 산업별로는, 미국은 전기·전자, 식·의약품에 대해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교통·안전 분야에 대해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2008~2012년보다 최근 5년간 전기·전자 분야에서의 TBT 통보문이 177건 늘어났고,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에서도 각각 109건, 103건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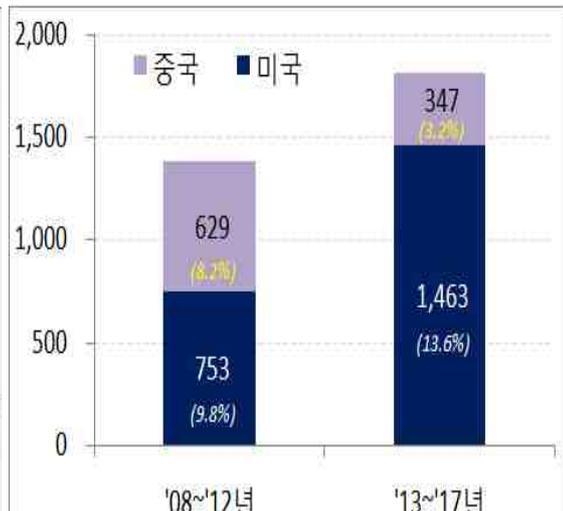
· 동기간 중국은 교통·안전 분야에서만 11건 증가, 다른 분야는 모두 감소 함

< 연도별 對한국 TBT 통보 추이 > (건)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로 HRI 재구성.

< 기간별 미·중 對한국 TBT 통보 추이 > (건)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 )는 전세계 건수 대비 비중임.

3) 국가기술표준원 TBT통계는 동일 건에 대해 추가이슈(addenda) 혹은 정정이슈(corrigenda) 등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집계되기 때문에 WTO-iTIP 통계의 합계와 크게 차이날 수 있음.

< 미·중 산업별 對한국 TBT 통보 추이 >

(건)

산업구분	'08~'12년 (A)		'13~'17년 (B)		(B-A)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중국
전기·전자	150	113	327	49	177	-64
식·의약품	142	61	251	58	109	-3
화학세라믹	92	105	195	26	103	-79
교통·안전	141	63	180	74	39	11
생활용품	105	50	111	42	6	-8
기 타	123	237	399	98	276	-139
<b>TOTAL</b>	<b>753</b>	<b>629</b>	<b>1,463</b>	<b>347</b>	<b>710</b>	<b>-282</b>

자료 : 국가기술표준원 자료로 HRI 재구성.

④ SPS<sup>4)</sup>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 : Sanitary and Phytosanitary)

○ 최근 5년간(2013~2017년) 중국의 동식물 위생검역 조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강화 추세를 보임

- 지난 10년(2008~2017년)간 세계의 對한국 SPS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
  - 전 세계의 對한국 SPS 조치는 2008년 2,286건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7년에는 1,909건을 기록
  - 동기간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SPS 조치도 감소 추세
  - 대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 2010년 이후부터 SPS 통보건수가 감소 양상을 나타냄
- 특히, 최근 5년간 미국의 對한국 SPS 조치는 2008~2012년 기간보다 50% 이상 감소했고, 중국도 동기간 24% 정도 감소
  - 2008~2012년 사이 미국의 對한국 SPS 통보건수는 전 세계의 18.1%인 2,000건을 기록하였으나, 2013~2017년에는 50% 이상 감소한 973건을 기록
  - 동기간 중국의 對한국 SPS 통보건수도 913건에서 23.7% 감소한 697건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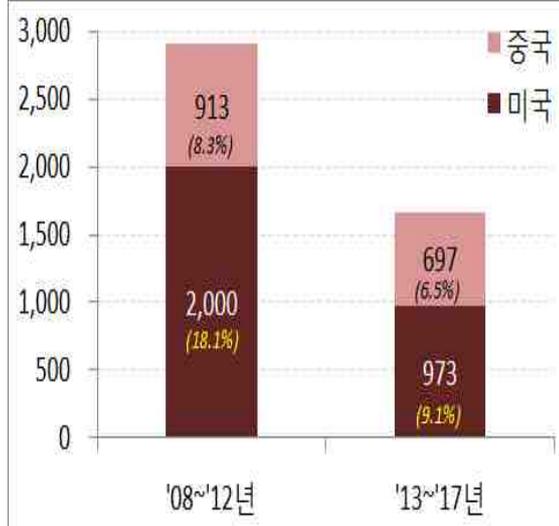
4) 농림축산부 SPS통계는 동일 건에 대해 추가이슈(addenda) 혹은 정정이슈(corrigenda) 등이 발생했을 때 추가로 집계되기 때문에 WTO-iTIP 통계의 합계와 크게 차이날 수 있음.

< 연도별 對한국 SPS 통보 추이 > (건)



자료 : SPS정보관리시스템 자료로 HRI 재구성.

< 기간별 미·중 對한국 SPS 통보 추이 > (건)



자료 : SPS정보관리시스템 자료로 HRI 재구성.

주 : ( )는 전세계 건수 대비 비중임.

- 유형별로 볼 때, 중국은 식품안전 분야에서 점차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볼 때, 미국은 최근 5년간 과거보다 해충·질병 부문에서 484건의 조치가 줄어들었고 동식물 부문에서도 283건이 감소
  - 동기간 중국도 해충·질병 부문에서 289건이 감소하였으나, 식품안전 부문에서는 오히려 80건이 증가함

< 미·중 유형별 對한국 SPS 통보 추이 >

(건)

산업구분	'08~'12년 (A)		'13~'17년 (B)		(B-A)	
	미국	중국	미국	중국	미국	중국
수역 <sup>5)</sup>	486	15	203	10	-283	-5
식품안전	766	454	528	534	-238	80
해충·질병	722	441	238	152	-484	-289
기타	26	3	4	1	-22	-2
<b>총합계</b>	<b>2,000</b>	<b>913</b>	<b>973</b>	<b>697</b>	<b>-1,027</b>	<b>-216</b>

자료 : SPS정보관리시스템 자료로 HRI 재구성.

5) 수역(獸疫, 동물獸 방역疫),은 Animal health를 의미함.

### ⑤ 수량제한 조치⑥(Quantitative Restriction)

○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주로 동식물·식품, 화학제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과거보다 3배 이상 빈번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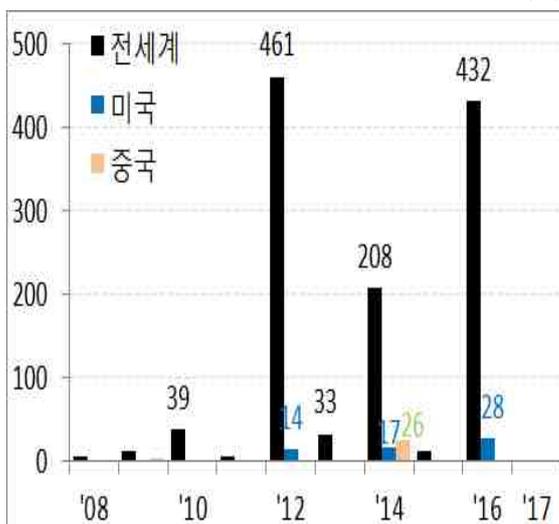
- 수입품의 양을 직접 제한하는 수량제한 조치는 주로 2012~2016년 사이에 빈번하게 나타남

- 글로벌 국가의 對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주로 2012~2016년 사이에 집중되어 있으며,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던 연도는 2012년 461건, 2014년 208건, 2016년 432건임
- 미국의 對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2016년에 2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중국은 2014년 2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주로 동식물·식품, 화학제품 등 분야에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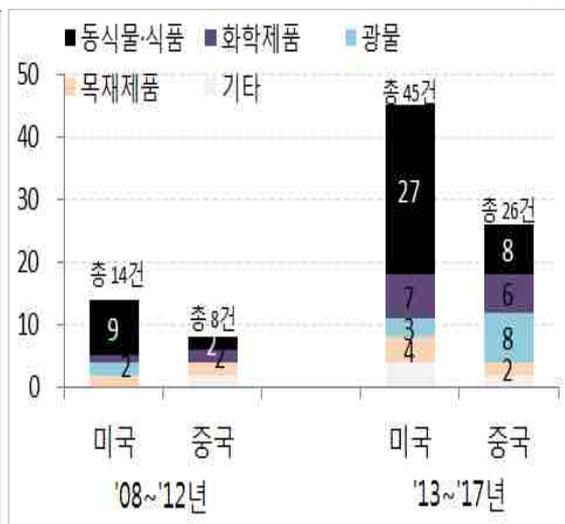
- 해당 제도의 남용이 국제무역의 침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세계무역기구는 수량제한의 철폐에 노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 ※ 관세청 용어설명집 참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수량제한 조치 실행건수는 최근 5년(2013~2017년)이 지난 2008~2012년 보다 각각 3배 이상씩 증가

< 연도별 對한국 수량제한조치 > (건)



자료 : WTO-ITIP 자료로 HRI 재구성.

< 기간별 미·중 對한국 수량제한조치 > (건)



자료 : WTO-ITIP 자료로 HRI 재구성.

6) 수량제한조치는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에 특정상품에 정해진 수량만큼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를 말함.

###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 ○ 종합평가

○ 최근 5년(2013~2017년)간 미·중의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지난 5년(2008~2012년)보다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나,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 강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됨

- 최근 5년간 미국의 對한국 전체 보호무역 건수는 지난 5년보다 소폭 감소
  -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보호무역 조치 범주 내에서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전체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최근 5년간 소폭 감소함
- 다만, 반덤핑 등 수입규제뿐 아니라, 무역기술장벽(TBT), 수량제한은 늘어나는 양상을 보임
  - 최근 5년간 미·중의 對한국 수입규제조치는 지난 5년보다 건수가 증가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에게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급증하고 있음
  - 더욱이 무역기술장벽(TBT), 수량제한(QR) 등도 미·중의 對한국 조치가 늘어남
- 이에 따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보호무역 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2008~2012년 대비 2013~2017년 미·중의 對한국 보호무역 평가 >

구 분	미국	중국
전체 보호무역 조치	- 조치 건수 감소 · 1,754건 → 1,694건	- 조치 건수 감소 · 1,205건 → 966건
수입규제	- 조치 건수 급증(2건 → 22건) - AD 및 CV 중심으로 급증 - 철강 및 전기·기계제품에 집중	- 조치 건수 증가(3건 → 7건) - 최근 AD, SG 조사사례 증가 - 화학제품 및 고무플라스틱 소폭 증가
무역기술장벽 (TBT)	- 조치 건수 연평균 10.9% 증가 - 전기·전자, 식약, 화학·세라믹 등 분야 100건 이상씩 증가	- 조치 건수 연평균 11.8% 감소 - 교통·안전 분야 중심으로 증가
동식물위생검역 (SPS)	- 조치 건수 감소(2,000건→973건) - 동식물, 식품 안전 등 쏠분야 감소	- 조치 건수 감소(913건→697건) - 식품 안전 분야 증가
수량제한	- 조치 건수 증가(14건→45건) - 동식물 및 식품 중심으로 증가	- 조치 건수 증가(8건→26건) - 동식물·식품, 화학제품 등 증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AD, CV, SG는 각각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를 의미.

○ (시사점)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기업 자체의 차별화된 기술역량이 강하게 요구됨

- 첫째,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기 위해 정부부처의 역할이 중요
  - 정부부처 별로 TBT, SPS 등 보호무역 관련 정보가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정보수요자 입장에서 정보접근성이 다소 불편함
  - 비관세장벽 및 통상 전문 인력을 늘려 기업들의 무역활동 지원 필요
  - 보호무역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한 수출 중소기업에 통상정보 제공과 더불어 법률지원 강화 필요
  -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국제기구의 중재를 요청하고 양자간 무역협정 위반여부 검토 등을 진행할 필요성도 있음
- 둘째, 보호무역주의 관련 사안에 얽혀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음
  - 기술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명목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 표준과 환경 및 안전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서로 다른 기술 기준, 행정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기술표준화 등을 모색해야 함
  - 또한, 상호인증제도(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도입도 지속적으로 확대 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셋째, 기업 자체의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주요국의 對한국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된다면 우리나라 외수경기 회복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기술수준 업그레이드와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야 함
  - 기업 자체적으로 상대국 무역정책 및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등으로 보호무역 피해 최소화 강구
  - 관련 품목에 대한 상대국 시장 분석을 면밀히 진행하여 상대국의 수입 규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중국경제팀 천 용 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한 재 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부록 1】 보호무역 조치의 구분**

< 주요 보호무역조치 유형 >

구 분		유 형
관세		- 관세부과 조치
수입규제 (무역구제조치)		- 세이프가드(SG : Safeguards), 상계관세(CV : Countervailing), 반덤핑(AD : Anti Dumping)
비관세 장벽	기술조치	- 무역기술장벽(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생 및 검역(SP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선적前 검사
	비가격조치	- 수량제한조치(QR : Quantitative Restrictions), 금융조치, 반독점 조치
	가격조치	- 관세/유사관세조치, 가격통제조치
	제도적 조치	- 무역관련 투자조치, 유통제한, 보조금, 원산지규정, 지식재산권 등

자료 : UNCTAD TRAINS 자료로 HRI 재구성.

**【부록 2】 중국, 미국의 주요 강제 인증제도**

< 중국의 주요 강제 인증제도 >

유형	제도명	제도 내용	적용 대상 품목
TBT	강제성 제품인증 제도 (CCC, 전기안전 분야)	- 제품의 품질, 안전성, 환경성 등에 관한 적격심사 제도 - 품목별표준과 기술법규에 꼭 부합해야 함	차량차량안전부품, 정보통신단말기 장비, 안전기술방제품, 가정용 및 유사용도제품 등 20개 대부분의 151가지 제품
	통신제품형식승인 (SRRC)	- 수입 무선제품은 '무선전송장비 형식 승인 인증서' 획득 필수 - Type Approval Identifier 보유 필수	공공 이동통신설비, 무선 접속시스템, 전용네트워크 설비, 위성설비, 라디오/TV설비, 단거리 무선설비, 레이더, 기타 무선전파 송신설비 등
SPS	화장품 행정허가 (CFDA)	- 화장품 위생행정허가 또는 위생허가증을 획득 필수 - 검역검사를 거쳐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 획득 필수	일반류 (두발용품, 스킨케어, 메이크업, 입술보호/화장제품 등), 특수용도화장품 (발모제, 염색제, 자외선 차단제, 기미제거류, 탈모제류 등)
	의약품 위생허가 (CFDA)	- 약품의 GMP(제조품질 관리) 인정 필수	한약, 천연약물, 화학약품, 생물학적 제제 등
	식품 수입허가 (CFDA)	- 제품 위생검사합격증서 획득 필수 - 수출국에서 발급한 식품검사증서 원산지 증명서 등 서류 필요	가공식품 등

자료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자료로 HRI 재구성.

< 미국의 주요 강제 인증제도 >

유형	제도명	제도 내용	적용 대상 품목
TBT	자동차안전인증 (DOT-FMVSS)	- 자동차류 및 그 아이টে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수행요건 관련 규범임	브레이크 시스템, 제어 시스템, 연료시스템, 오토바이 헬멧, 안전벨트 부품, 브레이크 호스, Air 브레이크 시스템 등
	무선통신인증 (PTCRB)	- 무선통신망에 단말기를 등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술적 요구사항 - 모든 단말기는 해당 인증획득이 필수	UTRA(UMTS), Cellular GERAN(GSM), E-UTRA(LTE) 단말기 등
	친환경 인증 (Green Guard)	- 실내 환경 및 공기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 - 실내 공기에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을 극소량 방출하는 제품임을 보장하는 인증제도	실내공기청정, 빌딩·건설, 미생물 저항 제품 등 (접착제, 어린이제품, 상업사 무용기구, 천장재, 바닥재, 절연재, 조명, 매트리스 및 침구, 페인트 및 코팅, 패널, 섬유, 벽지 제품, 등)
SPS	식품안전 (US FDA)	- 제품시설 혹은 제품에 대한 정기검사, 샘플분석 필요	산화 및 저산통조림식품/음식물 시설 등은 시판전 검사 및 사전승인 필수, 동물용 사료/화장품/일반식품류 등
	의약품 인증 (US FDA)	-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의 승인 획득이 필수	신약, 처방의약품, 비처방의약품

자료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자료로 HRI 재구성.

【부록 3】 미국의 對한국 세이프가드(SG) 판정결과

조사개시 : 2017-06-05    최종결정 : 2018-01-22

제품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세탁기 완제품	쿼터 내 관세율	20%	20%	20%
	쿼터량(연간)	120만대	120만대	120만대
	쿼터 외 관세율	50%	45%	40%
세탁기 부품	쿼터 내 관세율	0%	0%	0%
	쿼터량(연간)	5만대	7만대	9만대
	쿼터 외 관세율	50%	45%	40%

조사개시 : 2017-05-17    최종결정 : 2018-02-07

제품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CSPV 셀	쿼터 내 관세율	0%	0%	0%
	쿼터량(연간)	2.5GW	2.5GW	2.5GW
	쿼터 외 관세율	30%	25%	20%
모듈	관세율	30%	25%	20%

자료 : NTB 자료로 HRI 재구성.